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의 검토결과 통지서

「의료기기법」 제8조의2(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3항(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판 후 조사결과의 검토결과를 통지합니다.

업허가번호		구 분	[] 제조 [] 수입
신청인 (대표자)	성 명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 번호	
제조(수입)업소	명칭(상호)	업 허 가 번 호	
	소재지		
제 조 원 (수입 또는 제조공정 전부 위탁의 경우)	제조업소명	제 조 국	
	소재지		
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대상 명칭 (제품명, 품목명, 모델명)		분류번호(등급)	
허 가 번 호		허 가 연 월 일	
적 합 / 부 적 합 여 부			

붙임: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후속조치에 관한 세부사항

※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 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신청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식품의약품안전처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210mm × 297mm[백상지 80g/m² 또는 중질지 80g/m²]